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8. 27
기획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8월 18일

· 회부일자 : 1998년 8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2.3차 기획내무위원회(1998.8.25. ~ 8.27)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IMF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도 자체 조직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실·국·본부 및 소속행정기관의 통·폐합운영 계획에 따라 기능을 재배치함은 물론 시대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를 수용, 소속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규제·통제부서 기구조정
 - 국단위 조직인 「감사실」을 과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
 -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
- 유사 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 「복지환경국」으로 개편
- 자치시대에 알맞도록 실·국·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
 - 내무국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국 → 문화진흥국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사업소 → 산림환경연구소
 - 농축산사업소 → 축산위생연구소
- 「공업경제국」에 국제협력기능을 보강, 「경제통상국」으로 명칭변경
- 기능유사 기구의 통폐합
 - 자연학습원 → 산림환경연구소로 흡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진영)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당면한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행정기구 및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안에 있어서 제1장 총칙, 제2장 의회사무기구, 제3장 부지사, 제4장 본청, 제5장 직속기관, 제6장 사업소와 부칙을 두어 도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현행 11실국본부 10직속기관 7사업소에서 8실국본부 10직속기관 6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규제 통제부서인 감사실은 과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폐지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유사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하여 복지환경국으로 하였고, 기능유사 기구인 자연학습원은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 흡수하는 등 1실 2국 1사업소를 감축하였으며
- 또한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명칭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내무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공업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진흥국으로,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산림환경사업소는 산림환경연구소로, 농축산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개별 조례로 설치되었던 의회사무처·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게 됨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2개 조례를 폐지하였고,
또한 본 조례제정으로 실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북도정 조성위원회

조례외 23개의 조례조문중 변경된 실국장등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한시 기구로 설치된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는 존속기한을 99년 12월말로
하는등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
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도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업무 기능상 효율적이지 못한 문화
진흥국의 분장사무중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 업무를 건설교통국으
로 조정하여 기존의 주택과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을 추진토록 하고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여성정책관실에 두기로 하였던 생활개선
지도 업무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조정하여 농촌부녀자의 조
직운영과 농촌 의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도하도록 하며

현행 조문상 나타난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정리와 행정기구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진흥국 분장사무중 “주택건설,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과 “건축문화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업무는 삭제하고(안 제11조 제8호~제9호)

- 건설교통부에 「건축행정 및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농촌 생활개선 지도」 사무를 신설함.(안 제 12조 제13호~제14호, 제26조 제13호)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행정기구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함(안 제5장 제2절~4절, 제6장 제1절~제6절)

7. 심 사 결 과 : 수정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동조례 제정안제11조중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12조중 “13. 주택건설, 건설종합계획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과 “14.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을 안 제 26조중 “13. 농촌 생활개선 지도”를 신설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 및 행정기구명칭등을 수정의결하였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 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대비표